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1. 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1. 16. 한선미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6. 1. 20.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6. 1.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한선미 의원

가. 제안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의 변경
-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관련 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연임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안 제13조)
- 사업비의 지원(안 제14조)
-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교육 및 홍보, 비밀준수 의무 등(안 제16조~안 제17조)

3.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한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18. 12. 24 제정되고 2019. 12. 25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 기여 및 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고자 제출된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 안 제7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 안 제8조 내지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4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5조에서는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6조 내지 안 제1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으로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책무를 규정한 바,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책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는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7조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 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 여성폭력의 범주를 확대하고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는 여성폭력을 ‘안전’ 중심으로 아동과 규율하는 구조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정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의 아동학대

부분을 삭제하고, 여성폭력방지에 특화된 조례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종합검토의견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각종 여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규정함은 타당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되거나 저촉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가정폭력의 주를 이루고 있는 여성폭력과 아동학대는 상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60% 정도가 중복하여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 후 여성폭력과 아동학대(폭력)의 중복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관련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 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 여성복지시설 현황 (8개소)

구 분	시 설 명 (법 인 명)	시설장 (대표자)	비 고 (지원내용)
가 정 폭 력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사랑의집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	김형미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의료비, 퇴소자립지원금, 기능보강비 ※ 현원:9 (정원:10)
성 폭 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 림 터	조은희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퇴소자립지원금, 기능보강비 ※ 현원:6 (정원:8)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운영비, 인건비, 의료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소희 운영비, 인건비, 의료비
		군인권센터 부설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운영비, 인건비, 의료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이정한 의료비
성 매 매	일반지원시설	한국여성의집	이정미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 구조지원사업비,기능보강비 ※ 현원:8 (정원:15)
	자립지원동공생활시설	소소뜨라	이정미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기능보강비 ※ 현원:3 (정원:5)

3. 마포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근거법령	지원 내용	예 산 (국,시,구비 현황)
1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조례」	·성폭력 피해로 인한 성병감염 여 부 검사·정신질환 치료·진단서 발급 비용 등 지원	24년: 163,000천원 25년: 174,500천원 (국비50:시비50)
2	찾아가는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사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내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추진	24년: 16,520천원 25년: 16,700천원 (구비)
3	안심이 CCTV 관제 24시간 모니터링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안심이 전담 cctv 관제 요원 4명 근무 ·안심이앱 사용자의 귀가 모니터링 및 긴급신고 발생 시 사건·사고 대응 ·안심이앱 가입자: 11,037명	24년: 150,000천원 25년: 150,000천원 (국비50:시비50)
4	안심장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조례」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스토킹피해자 안심장비 지원 ·주거안전취약계층 안심 장비 지원	24년: 20,000천원 25년: 10,000천원 (시비)
5	방범시설물 설치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여성안심귀갓길 노면 보수 ·여성안심귀갓길 로고젝터 설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기 설치	24년: 4,000천원 25년: 4,000천원 (구비)
6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점검장비 활용하여 민간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민감시단: 10명(월1회 활동)	24년: 6,000천원 25년: 3,000천원 (시비)
7	구석구석 안전모니터링단 운영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여성안전시설물(안심귀갓길, 보 도블럭, 보안등 등) 점검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 ·모니터링단: 12명, 월4회 활동	24년: 12,000천원 25년: 12,000천원 (구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